

제297회 임시회

2011. 01. 27.(목)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01.27.(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 2011년 01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01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01월 21일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구명희)

가. 제안이유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를 신설하고,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과정 이수에 해당하므로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무료화하여 응시생의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3호 단서)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종전 10,000원에서 무료로 함(안 별표)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왕년)

-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와 관계 법령에 따라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할 경우 응시 수수료를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의무교육과정 이수에 해당되므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응시수수료(1인당 10,000원)를 무료로 함으로써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임용시험 응시자 등의 권익보호와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생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와 관련)

(단위 : 원)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1.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1. 고등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수수료	1건	300	
2.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1. 응시수수료			
	가. 일반시험 나.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1인당 1인당	25,000 35,000	
3. 검정고시수수료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1인당	10,000	
	2. 성적증명서	1통	300	
	3. 합격증명서	1통	300	
	4. 과목합격증명서	1통	300	
4. 제증명수수료	1. 신원에 관한 증명			
	가. 재직,경력,퇴직에 관한 증명	1건	300	
	나. 연수 및 이수에 관한 증명	1건	300	
	다. 각종 수상에 관한 증명	1건	300	
	라. 각종 고시, 시험(합격)증명	1건	300	
	마. 기타 신원에 관한 증명	1건	300	
	2. 학적에 관한 증명			
	가. 입학 및 합격에 관한 증명	1건	300	
	나. 재직에 관한 증명	1건	300	
	다.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증명	1건	300	
	라. 퇴학 및 제직에 관한 증명	1건	300	
	마. 수료에 관한 증명	1건	300	
	바. 졸업에 관한 증명	1건	300	
	사. 성적 증명	1건	300	
	아. 생활기록부(학적부) 증명	1건	300	
	자. 기타 학적에 관한 증명	1건	300	
	3.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가. 물품(용역)관련 각종 사실, 실적 증명	1건	300	
	나. 공사관련 각종 사실, 실적증명	1건	300	
	다. 공유재산에 관한 증명	1건	300	
	라. 학비 감면 증명	1건	300	
	마. 원천징수에 관한 증명	1건	300	
	바. 기타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1건	300	
	4. 학원,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증명	1건	3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p>	<p>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p>-----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 2)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와 관련)

[현행]

(단위:원)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3. <u>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u>	1. <u>응시수수료</u>	1인당	10,000	- <u>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u>
	2. 성적증명서	1통	300	<u>고사규칙 제2조</u>
	3. 합격증명서	1통	300	- <u>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u>
	4. 과목합격증명서	1통	300	<u>고사규칙 제17조</u>

[개정안]

(단위:원)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3. <u>검정고시수수료</u>	1. <u>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u>	1인당	10,000	<삭 제>
	2. 성적증명서	1통	300	
	3. 합격증명서	1통	300	
	4. 과목합격증명서	1통	300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 (응시수수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6.8, 2007.10.1>

[전문개정 1991.10.8]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2조 (수수료 <신설 1986.2.17>)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